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59215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0550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592153 판결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5. 8. 13.

판결 선고 2015. 9. 10.

###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1,250,876원 및 그 중 180,953,243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2014. 9.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82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01,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구분<br>순번  | 보증일자          | 보증금액(원)    | 보증기한<br>(보증기한변경)                 | 연체이율  |
|-----------|---------------|------------|----------------------------------|-------|
| 1차 신용보증약정 | 2010. 12. 21. | 90,000,000 | 2011. 12. 20.<br>(2014. 12. 19.) | 연 12% |
| 2차 신용보증약정 | 2011. 9. 23.  | 90,000,000 | 2012. 9. 21.<br>(2014. 9. 17.)   | 연 12% |

2)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12. 23.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12. 20.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2011. 9. 26.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9. 21.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위 각 변제기는 보증기한의 변경에 따라 2014. 12. 19.과 2014. 9. 17.로 각 연장되었다.

####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신용보증채무 이행

- 1) 피고 A은 2014. 9. 18.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17.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2014. 11. 28. 중소기업은행에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합계 181,025,733원((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90,000,000원 + 이자 250,456원) +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90,000,000원 + 이자 775,277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72,4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180,953,243원이 되었으며, 위약금 297,610원과 확정손해금 23원이 각 발생하였다.

#### 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의 말소

- 1) 피고 A은 2014. 9. 30. 중소기업은행과 정유회사에 대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인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B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0. 10.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36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되었는 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0.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401,824,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3, 갑 3 내지 6호증, 갑 7,

8호증의 각 1 내지 4, 이 법원의 부여축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81,250,876원(대위변제금잔액 180,953,243원 + 위약금 297,610원 + 확정손해금 2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잔액 180,953,24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6. 1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9. 30.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의 대출금 상환 연체를 이유로 2014. 9. 1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자력이 이미 악화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4. 11. 2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다.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1) 먼저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50,000,000원에 매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300,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피고A이 피고 B의 형인 C과 처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60,000,000원과 20,000,000원의 각 차용금 채무를 피고 B이 인수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피고 A의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2, 3호증, 을나5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5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A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A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70,000,000원을 일부 유류대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70,000,000원으로 원고를 제외한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를 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C에게 60,000,000원, D에게 20,000,000원의 각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설령 피고 A이 위와 같은 각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을나 3, 4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A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C과 D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와 같은

통지는 피고A이 그 채권자라는 C이나 D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내용증명에 불과하여 피고A의 소극재산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면책적 인수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 A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래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피고 A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70,000,000원이 피고 A의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B은 피고 A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수년 간 직원으로 일을 하여 오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급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A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4. 9. 18.부터 불과 12일 만인 2014. 9. 30. 중개인에 의한 중개도 없이 사장과 종업원 관계에 있는 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는 일부 채권자들에 대하여만 변제가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하여는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피고 A의 또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해위취소의 범위

### 1)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 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0. 6.경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401,824,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변론종결일 당시의 그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01,824,000원이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에 미달하므로, 위 101,824,00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01,82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01,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이택순, 판사 이숙미